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5 선고 2023가단5274912,
2024가단5115935(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사해행위취소 ·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독립당사자참가인 C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4. 6. 3.

판 결 선 고 2024. 7. 15.

주 문

-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 피고와 D(E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21. 8. 6.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24,285,71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24,285,7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제2 내지 3항 기재와 같다1).

[독립당사자참가]

피고와 D(E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8. 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24,285,714원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24,285,7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F 주식회사는 D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435397호로 대여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30. “D은 F 주식회사에게 13,065,075원 및 그 중 11,738,241원에 대하여 2013. 5. 13.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정은 2013. 6. 25. 확정되었다.

2) 그 후 원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였는데, 위 채권의 원리금은 2023. 7. 21. 기준 59,747,255원이다.

나. G의 사망 및 상속재산 분할협의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망 G은 2021. 8. 6.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H과 자녀들인 D, 피고가 있었다.

2) 피고와 D, H은 2021. 8. 6.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9.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와 접수 제56100호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그 후 피고는 2021. 12.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와 접수 제73188호로 근저당권자 조합,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2,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D의 무자력

D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의 적법 여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 요지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D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200065호 지급명령에 기한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D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D의 채권자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직권으로 위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민사소송법 제79조가 정하는 권리주장참가 또는 사해방지참가의 참가요건을 갖추어야만 적법한 참가신청이라 할 수 있고, 그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먼저 위 참가신청이 권리주장참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권리주장참가가 성립할 수 있기 위하여는 원고가 본소에서 주장하는 권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주장하는 권리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이 사건 본소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고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과 논리적으로 양립 가능하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는 권리주장참가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다음으로 위 참가신청이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사해방지 참가를 하기 위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본소는 원고와 피고가 독립당사자참가인 등 제3자를 해할 의사로 하는 사해소송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별도로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결국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본소의 결과에 의하여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위 참가는 사해방지참가로서의 요건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별도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에 대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이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D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D이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기여분을 고려할 때 D의 구체적 상속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7. 7. 16.경부터 2008. 6. 16.경까지 및 2021. 7. 3.경부터 2021. 8. 3.경까지 망인에게 매달 20만 원 내지 4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망인의 생활비나 진료비를 계속적·정기적으로 부담하지는 않았고, 그 금액 역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특별한 부양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② 피고는 망인의 대출금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여신거래내역만으로는 이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가액배상)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며,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인 2021. 12.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I조합,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2,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1. 2. 1.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 평균가격이 1억 500만 원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D의 상속지분이 2/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부분은 3,000만 원(= 1억 500만 원 $\times$ 2/7)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21. 8. 6.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피보전채권액과 공동담보가액 가운데 적은 금액인 3,00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4,285,71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4,285,7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욱

별지

1) 이 사건 청구원인 등에 비추어 청구취지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선택한다.

2)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나, 2021. 2. 1. 무렵과 비교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에 있어 급격한 변동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요인들을 찾아볼 수 없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시가도 이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